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86
----------	-----

2018. 4. 5.(목)
행 정 문 화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3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3월 23일

－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 이행,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기구 조정>

○ 신 설(안 제13조의2)

- 환경산림국

○ 명칭변경(안 제13조)

- 바이오환경국 → 바이오산업국

<분장사무 조정>

○ 이 관(안 제13조의2)

- 환경정책, 기후대기, 수질관리 업무 : 바이오환경국 → 환경산림국
-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 : 농정국 → 환경산림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개정조례안은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 이행,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의 국단위를 1개 추가 증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전담부서를 국단위로 신설하고,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농정국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산림을 개발의 관점이 아닌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부칙 제8항의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도록 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부칙 제8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사항 삭제(향후 운영위원회의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할 사항)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제786호
의결 연월일	2018년 월 일 (제363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8년 3월 1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6
----------	-----

제출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 이행,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구 조정>

- 신 설(안 제13조의2)
 - 환경산림국
- 명칭변경(안 제13조)
 - 바이오환경국 → 바이오산업국

<분장사무 조정>

- 이 관(안 제13조의2)
 - 환경정책, 기후대기, 수질관리 업무 : 바이오환경국 → 환경산림국
 -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 : 농정국 → 환경산림국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바이오환경국”을 “바이오산업국, 환경산림국”으로 한다.

제10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한다.

15.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 기획·조정
2.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3.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4.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
5.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6.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
7.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8. 오송역세권 개발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
6.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7.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8.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환경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환경 분과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통상국, 바이오산업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
------------	------------------	---

②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바이오산업국장,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u>바이오환경국</u>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 ————— ————— <u>바이오</u> <u>산업국, 환경산림국</u> ——— —————.
제10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u>15. 축산, 수산, 산림에 관한 사항</u> <u>16.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u>	제10조(농정국)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u> <u><삭제></u>
제13조(바이오환경국) 바이오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바이오산업 기획·조정</u> <u>2. 오송역세권 개발</u> <u>3. 삭제</u> <u>4. 바이오산업 육성·지원</u> <u>5.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u> <u>6.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u> <u>7.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u>	제13조(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바이오산업 기획·조정</u> <u>2. 바이오산업 육성·지원</u> <u>3.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u> <u>4.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u> <u>5.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u> <u>6.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u> <u>7. 화장품·뷰티산업 진흥</u>

현 행	개 정 안
<u>8.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u> <u>9. 화장품·뷰티산업 진흥</u> <u>10.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u>11.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u> <u>12.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u> <u>13.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u> <u>14.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u> <u>15.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u> <u>16.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u> <u>17.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u>	<u>8. 오송역세권 개발</u>
<신 설>	제13조의2(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u>2.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u> <u>3.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u>4.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 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 속에 관한 사항</u> <u>5.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 리</u> <u>6.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u> <u>7.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u> <u>8.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u> <u>9.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u>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